

2025. 2. 28.(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제2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심 의 안 건 】

- ①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②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③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④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 집회개요

-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 소집요구: 시장 / 2. 24.(월)
- 회 기: 3. 10.(월) ~ 3. 19.(수) / 10일간
 - 의사일정(안): **【붙임】** 참조
 - 집회일시 및 장소
 - 제1차 본회의: 3. 10.(월) 10: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3. 19.(수) 10:00, 본회의장
 - 공 고 일: 3. 4.(화)
- 주요내용
 -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시정질문 및 답변

□ 운영일정

1. 제1차 본회의 ————— 3. 10.(월) 10:00

-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시정질문 (도교위 → 재문위 → 행복위 順)
 - ※ 휴회 결의: 3. 11.(화) ~ 3. 18.(화) / 8일간

2. 상임위원회 활동 ————— 3. 11.(화) ~ 3. 18.(화)

- 조례안 등 회부안건 심사

3. 제2차 본회의 ————— 3. 19.(수) 10:00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 협의사항

-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붙임】 의사일정(안)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2025. 3. 10.(월) ~ 3. 19.(수) (10일간)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 10.(월) 10:00	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시정질문 (도교위 → 재문위 → 행복위 順) ※ 휴회 결의: 3. 11.(화) ~ 3. 18.(화) / 8일간	
3. 11.(화) ~ 3. 18.(화)	휴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3. 19.(수) 10:00	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 상기일정은 의회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625-8020, 8021)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 .

제 안 자 :

1. 제안이유

-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 및 기준 확대(안 제14조제4항)
-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대상자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3일 부여 신설(안 제14조제7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지역의 재난·재해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새내기 도약휴가는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지역의 재해·재난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지역의 재난·재해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새내기 도약휴가는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의장은 지역의 재해·재난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특별휴가) ⑪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세부 기준은 제7항 후단 및 각 호를 준용한다.

□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특별휴가)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특별휴가) ⑥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9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④ 5년 미만 재직한 자연차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적응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 : 1일
2.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1일
3.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1일
4.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1일
5. 재직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1일

⑧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경우 의장은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 징계절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위 법령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징계대상자’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위반한 의원을 추가하고, 의장의 직권에 의한 징계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62조제1항)
- 나. 조문의 일부를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62조제2항 및 제4항)
- 다. 징계요구자 주체별 징계 회부 시한 기산일을 명확히 함(안 제6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으로,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을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징계요구가 있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2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62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62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에 <u>해당하는</u> 징계대상 의원(이 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 어 <u>징계요구가 있으면</u>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 회에 회부한다.	제6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 <u>해당하거나 「공직자의 이</u> <u>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u> <u>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u> --- <u>있을 때에는</u> ----- -----.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 게 제출한다. <u>이 경우 의장은 제</u> <u>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u> <u>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u>	②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u>제3항에</u> 따른 징계요 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 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 <u>제2항 및 제3항</u> ----- ----- ----- -----.
제6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2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u>징계요구가</u>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 ----- -----.

<u><신 설></u>	<u>1. 제62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u>
	<u>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u>
	<u>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u>
<u><신 설></u>	<u>2. 제62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u>
	<u>의 보고를 받은 날</u>
<u><신 설></u>	<u>3. 제62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u>
	<u>구서를 제출받은 날</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2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원의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천시회의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

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윤리강령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

-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 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5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84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에 해당 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또는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와 입증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및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2021.12.3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은 해당 보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의원이 요구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의장은 요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구서를 작성한 의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83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

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한다.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의장의 징계 규정 유사의회 [의장은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보고 및 회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8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9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3조(징계회부 및 요구의 시한)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 .

제안자 :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을 증진시키며, 시민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함(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983(2024.6.30)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관련).

2. 주요내용

- 가.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을 신설
(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 나.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설치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다.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함
(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타시군 비교표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예산조치

다.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경우 의장은 제8조의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 연구,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또는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지원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사업 기간의 적정성
3.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
2. 위촉직 위원: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결과 공개) ①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위원회명)		
대 표 의 원		
연 구 주 제		
심 의 결 과	내 용	
	결 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의원정책개발비) ① 의장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의원의 개인 연구 등에는 지원할 수 없다.</u>	<u>제6조(의원정책개발비) 의장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7조(지원절차 등) ①·② (생략)</u> <u>③ 의원정책개발비의 경우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u> <u>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사업기간의 적정성</u> <u>3.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u>	<u>제7조(지원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u> <u>③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경우 의장은 제8조의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에 관한 사항

④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정책연구용역 심의)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 및 해당 연구단체가 제7조에 따른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 연구,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또는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지원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사업기간의 적정성
3.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

는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참석토
록 하여 해당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심의 후에 별
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
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
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
칙」에 따른다.

제9조(의원연구사례집) 의장은 연
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
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
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

2. 위촉직 위원: 연구용역에 경

<u><신 설></u>	<u>협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3명</u>
<u><신 설></u>	<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u>
<u><신 설></u>	<u>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1조(연구활동결과 공개) ①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u>제10조</u> (생 략)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 로 발간할 수 있다. <u>제12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	---

참고 1

타시군 비교표

□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책연구용역 관련 조례 중 심의기구 현황

(단위: 명)

시군별	기초 의원수	심의기구 규정여부	심의회 운영 방법
31개	463		
수원시	37	○	- 총 7명의 위원 - 당연직 위원 : 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간사(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의장이 주요심의 연구 활동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5명을 선정. ※ 전문가 풀은 10명 이내로 구성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용인시	32	○	- 총 8명 / 의회운영위원회가 기능을 수행.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사용 심사, 연구용역비 지원 및 심사
고양시	34	○	- 최대 12명 /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4명 및 관련 전문가 포함.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화성시	25	○	- 최대 11명 / 위원장 호선 -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의장은 관련 전문가를 최대 5명까지 위촉 가능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성남시	34	○	- 최대 10명 / 위원장 호선 -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부천시	27	×	
남양주시	21	○	- 최대 5명 / 위원장 호선 -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위원 3명 이내로 구성. - 주요심의 : 연구활동계획 승인, 예산 지원 여부, 연구용역비 심사

시군별	기초 의원수	심의기구 규정여부	심의회 운영 방법
안산시	20	○	• 최대 9명 /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 외부 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심사
평택시	18	○	•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 외부 전문가 2명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심사
안양시	20	×	
시흥시	16	○	• 최대 7명 /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중 호선 •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심사
파주시	15	○	• 위원회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 • 주요심의 : 연구활동계획 승인, 예산 지원 여부, 연구용역비 심사
김포시	14	○	• 의장 포함 전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의장, 부위원장 부의장.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의정부시	13	○	• 위원회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위촉 가능. • 주요심의 : 연구활동계획 승인, 예산 지원 여부, 연구용역비 심사
광주시	11	×	
하남시	10	△	•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구성 / 위원장은 의장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위촉 가능.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용역비 승인
광명시	11	×	
군포시	9	○	• 최대 7명 / 위원장 의장 • 당연직 위원 : 의원 2명 •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시군별	기초 의원수	심의기구 규정여부	심의회 운영 방법
양주시	8	△	• 의회 전체 의원 구성 / 위원장은 의장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수시 위촉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용역비 심사
오산시	7	×	
이천시	9	○	• 의회 전체 의원으로 구성 / 위원장 의장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안성시	8	○	• 최대 5명 / 위원장 호선 • 당연직 위원 : 의회사무과장 • 전문가 2명, 시민단체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구리시	8	×	
의왕시	7	×	
포천시	7	○	•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 위원장은 운영위원장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위촉 가능.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양평군	7	×	
여주시	7	○	• 의회 전체 의원으로 구성 / 위원장 의장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용역비 심사
동두천시	7	○	• 최대 7명 / 위원장 의장 • 외부 전문가 및 의원으로 구성(의원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과천시	7	○	• 최대 9명. / 위원장 호선 • 당연직 위원 : 의회사무과장 •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의장이 위촉 • 주요심의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연구용역비 승인
가평군	7	×	
연천군	7	×	

○ 경기도 내 기초의회 조례중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별도 심의위원회 규정이 명문화된 현황

합계	조례상 규정 설치	조례상 규정 미설치
31개 기초의회	21개소	10개소

○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기초의회는 21개소 이며,

- 민간 위원 및 전문가 포함 위원회로 운영 : 12개소

-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 : 3개소

- 의회 전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는 : 6개소

※ 전 기초위원이 10명 이내 시·군

○ 이중 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 위원 및 전문가를 위촉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2명~ 5명 이내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 위원장 운영 방법

-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는 경우(8개), 당연히 시의회 의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는 경우(7개),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경우(6개) 등이 있음.

참고 2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6. 15.]